

## 제1장 최초규정 및 일반정의

### 제1절 최초규정

#### 제1.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

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.

#### 제1.2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

1.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그들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.
2.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국제법의 일반원칙을 고려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한다.<sup>1</sup>

#### 제1.3조 의무의 범위

---

<sup>1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항에 상정된 협의는 제20장(분쟁해결)에 수립된 분쟁해결절차의 단계를 구성하지 않는다.

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상 모든 규정의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, 중앙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, 그리고 그러한 정부와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구에 의한 협정의 준수를 포함하여, 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,

## 제2절 일반정의

### 제1.4조 정의

이 협정의 목적상,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,

**반덤핑 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적용대상투자**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,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, 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, 투자에 관한 정의 및 의무에 대한 양해에 정의된 것을 말한다.

**관세**는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, 그리고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,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.<sup>2</sup>

가.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

나. 제7장(무역구제)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

---

<sup>2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“관세”는 한국 「관세법」 제69조에 따라 부과되는 조정관세를 포함한다.

다.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, 또는

라.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

**관세평가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일**이란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.

**기업**이란 회사, 신탁, 파트너십, 단독소유기업, 합작투자, 협회 또는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,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,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.

**당사국의 기업**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.

**기존**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.

**자유사용가능통화**란 국제통화기금이 「국제통화기금협정」에 따라 결정한 “자유사용가능통화”를 말한다.

**GATS**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「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을 말한다.

**1994년도 GATT**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세계무역기구의 「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을 말한다.

**당사국의 상품**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

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하며,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.

**정부조달**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,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.

**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**란 양 당사국이 자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,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.

**호**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.

**수입허가협정**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「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**공동위원회**란 제22장(제도규정)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.

**조치**는 모든 법, 규정, 절차,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.

**국민**이란 다음을 말한다.

가. 한국의 경우, 「국적법」상 의미에서 한국 국민, 그리고

나. 에콰도르의 경우, 에콰도르 헌법에 따라,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에콰도르인

**원산지**란 제3장(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)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.

**인**이란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.

당사국의 인이란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.

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.

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「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말한다.

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「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사회연대경제란,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수용, 이익 및 자본 축적보다 인간과 노동을 그 활동의 핵심에 두고, 연대와 협력 및 상호주의 관계를 기반으로, 필요를 충족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<sup>3</sup>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, 상업화, 자금 조달 및 소비의 과정을 조직하고 개발하는 경제 조직의 한 형태이다.

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「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.<sup>4</sup>

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(HS)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.

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「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

---

<sup>3</sup> 서민연대경제의 구성원은 사회연대경제의 이해관계자이다.

<sup>4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소유 또는 소유지분을 통한 지배는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일 수 있다.

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.

- 가. 한국에 대하여,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, 해양 및 상공,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의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, 그리고
- 나. 에콰도르에 대하여, 에콰도르의 헌법에 따라, 에콰도르가 국제법과 자국의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본토, 해양, 인접 도서, 영해, 갈라파고스 제도, 대륙붕, 하층토 및 상공을 말한다.

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「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」을 말한다.<sup>5</sup>

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. 그리고

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「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」을 말한다.

---

<sup>5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“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”은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서,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효 중인 모든 면제를 포함한다.